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61

발의연월일 : 2021. 7. 27.

발 의 자 : 김성환 · 양이원영 · 양정숙

박완주・박 정・이해식

홍성국 · 천준호 · 신정훈

어기구 • 문진석 • 우원식

허 영·김영배·이용빈

김성주 • 윤영덕 • 강득구

신영대 · 위성곤 · 김원이

이원택 • 윤준병 • 이소영

이용선 · 민형배 · 이학영

김승원 · 김정호 의원

(29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간헐성과 변동성도 또한 증가하여 전력계통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 자원이 되고 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 수요자원 등이 보조자원으로 참여하는 통합발전소를 구성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입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통합발전소를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이 취급하여 거래를 위한 기준을 만족하는 통합발전소가 입찰한 발전량에 대해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급전지시를 받게 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① 출력변동성이 큰 신재생발전을 중앙급전발전기화 하여 출력변동성을 완화하고 ②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 ③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이에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 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 조제22호, 제31조제7항 및 제39조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안」(의안번호 제117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연결·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합발전소 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 록신청을 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제39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2.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
	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연결ㆍ
	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전력거래) ① ~ ⑥ (생	제31조(전력거래)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⑦ 통합발전소 사업자가 모집
	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 전
	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	제39조(회원의 자격)
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

는 통합발전소사업자